

구미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보완통보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청원 의 건 서

1. 처리기관 : 구미시장
2. 구미시 인의동 578번지의 11필지에 계획중인 공동주택건립 허가
건은 입주민 및 인근 주민의 편의와 사업자간의 공감대 형성을 도모
하기 위하여 사업허가 주체인 구미시장에게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
처리토록 의결하였다.

다 음

- 구미시도시계획조례 제30조에 의하면 주거지역의 5,000㎡
이상의 개발행위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
되어 있고, 자문결과를 참고하여 입주자 및 인근 주민에 이익이
될 때에는 조건을 부여 허가를 할 수 있으므로 보완서류 제출
요구는 정당하다고 사료되나,
- 주민의 편의를 도모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결과라 할 지라도
법에서 규정한 세대당 0.7대 이상의 주차면수를 과도하게 초과한
세대당 1대 이상의 주차면수 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
요구 사항으로 판단됨에 따라,
- 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입주민 및 인근
주민의 편의와 사업자간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리적인 방안을
모색한 후 허가할 것을 요구한다.

2005. 3. .

구 미 시 의 회 의 원 일 동